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2. 16 선고 2019가단5351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1. 12. 8 선고 2021나3055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2. 16 선고 2019가단53516 판결

전 문

원 고 유한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

담당변호사 전휴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계성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

변 론 종 결 2021. 1. 26.

판 결 선 고 2021. 2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“목록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전기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, 2014년경부터 ‘D’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C에게 전선, 케이블 등을 납품하고,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C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다.

나. 원고는 E 주식회사 등 납품업체에 납품대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, 2018. 9. 30.경부터 약속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자 2018. 10. 2.부터 2019. 1. 2.까지 E 주식회사 등의 소구에 응하여 약속어음금 합계 557,44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이후 원고는 2019년 2월경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C를 상대로 어음금 합계 557,440,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법원(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차143)은 2019. 2. 26. C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정본은 같은 해 3. 27. C에게 송달된 후 같은 해 4. 11. 확정되었다.

라. 한편 피고는 2015. 2. 2. 별지 “목록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2. 7. 2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C는 현재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부터 6, 8,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C와 부부 사이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237,440,000원에 취득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, C는 주식회사 F(이하 'F'이라 한다)로부터 전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단지 소유명의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. 설령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서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C는 여전히 위 부동산 중 1/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중 1/2 지분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그런데 C는 현재 무자력상태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또는 1/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바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1)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,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.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'특유재산의 추정'을 반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,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반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,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두8068 판결,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3다49572 판결,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을 제2호증의 1, 2, 3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2014. 11. 14. H로부터 F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, 양수대금 중 계약금 100만 원은 2014. 11. 7. C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, 계약금 중 잔금, 발코니 확장비, 웃돈(프리미엄) 합계 31,224,000원도 C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급되었으며, 잔금 68,772,000원과 발코니 확장비용 2,400,000원 합계 71,172,000원은 C가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그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 부분은 C가 출처라고 볼 수 있으나,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,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또 위 1.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혼인 중 그 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민법 제830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한홍

별지

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익산시 I에 있는 J아파트 K동

[도로명주소] 익산시 L

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23층 공동주택(아파트)

2.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23층 M호

3.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익산시 I 대 42,288㎡

4.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

소유권대지권, 42,288분의 53.9463. 끝.